

# 부천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 7월 1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과장 서 근 필)

### □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04호, 2007. 4. 27. 공포·시행)되고,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2007. 11. 17. 시행)됨에 따라,
-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를」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시장이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명령 등으로 함.(안 제2조제2항)

다. 시장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등 일반현황과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사항, 위반업소의 위치도 등으로 함.(안 제2조제3항)

라. 행정처분 내용의 공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함.(안 제3조)

마. 행정처분 내용의 공개기한을 최종적으로 공개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하도록 함.(안 제4조)

바. 시장이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안 제5조)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공개 방법 중 신문, 인터넷, 시보에 게재하는데 주로 어디에 공개 하고 있나?		○시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음.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 할 때 삭제 요건 기준은 무엇인가?		○명단을 공개 후 30일이 지나면 인터넷은 시에서 삭제되나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사항은 중앙부처에 질의하여 답변 드리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8호
의결 년월일	2008. 7. 18 (제145회)

제출년월일 : 2008. 6. 3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04호, 2007. 4. 27. 공포·시행)되고,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2007. 11. 17. 시행)됨에 따라,
-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 나. 시장이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명령 등으로 함.(안 제2조제2항)
- 다. 시장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등 일반현황

과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사항, 위반업소의 위치도 등으로 함.(안 제2조제3항)

라. 행정처분 내용의 공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함.(안 제3조)

마. 행정처분 내용의 공개기한을 최종적으로 공개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하도록 함.(안 제4조)

바. 시장이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안 제5조)

□ 첨 부 : 부천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 관한 조례

# 부천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배출업체의 사회적 도덕성과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심 제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명령
2. 조업정지명령
3. 허가취소
4. 사용중지명령
5. 폐쇄명령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업종 등 일반현황
2.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사항
3. 위반업소의 위치도 및 사진

제3조(공개방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4조(공개기한 등) 제3조에 따른 공개의 기한은 최종적으로 공개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 부천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09. 25 조례 제17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배출업체의 사회적 도덕성 및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심 제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 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및 관련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대기 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수질 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 배출업소 또는 폐수 배출업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선명령
2. 조업정지명령
3. 허가취소
4. 사용중지(금지)명령
5. 폐쇄명령
6. 경고(병과 고발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현황 :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2.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 사항
3. 위반업소의 위치도 및 사진

제3조(공개 방법) 시장은 인터넷 일간신문 반상회보 등에 업소의 위반사항과 관련된 행정처분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할 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 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0.09.25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